

시험과목(제3조제1항 관련)

1. 제1차 시험(4과목)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조약을 포함한다),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은 제외한다), 자연과학개론, 영어

2. 제2차 시험(4과목)

가. 필수과목 (3)	특허법(조약을 포함한다), 상표법(조약을 포함한다), 민사소송법
나. 선택과목 (1)	디자인보호법(조약을 포함한다), 저작권법(조약을 포함한다), 산업디자인, 기계설계, 열역학, 금속재료, 유기화학, 화학반응공학, 전기자기학, 회로이론, 반도체공학, 제어공학, 데이터구조론, 발효공학, 분자생물학, 약제학, 약품제조화학, 섬유재료학,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공학 중 1과목